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0가단90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1. 3. 23.

판결 선고 2021. 5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7,780원 및 이에 대한 2020. 6. 23.부터 2021. 5. 4.까지는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. 6. 16.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연43,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90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,016,4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, 2020. 6. 16.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연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8. 6. 4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원고들 토지'라 한다) 각1/2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이고, 피고는 2011. 4. 5.경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23, 22, 21, 20,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1㎡(이하 '이 사건 점유 토지'라 한다)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.

다.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8. 6. 4.부터 2021. 6. 3.까지의 이 사건 점유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315,560원이고, 2021. 6. 3. 당시 임료는 연 86,940원이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피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, 임료감정결과는 지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.

나.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 한편, 이 법원의

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'잡종지'이나 실제 현황이 '전'이고,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재 이용상황에 따라 농지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, 이러한 산정방식은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. 6. 3.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157,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6. 23.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5. 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, 위 시점 이후의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2020. 6. 16.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원고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지분비율에 따라 각 연 43,470원의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우

별 지 목록

1. 경기도 포천시 [] 잡종지 1632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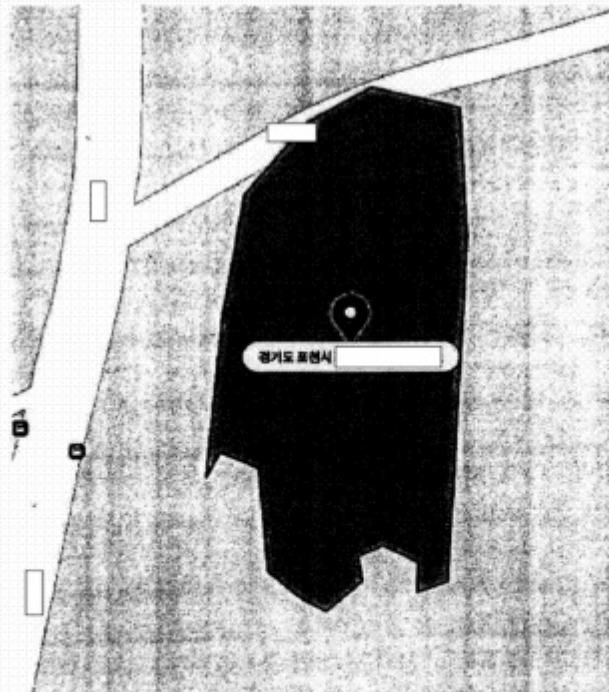
-원고 [] 및 원고 []의 공유토지-



2. 경기도 포천시 [] 공장용지 3303㎡

-피고 주식회사 [] 소유 토지-

3. 도면



감 정 도

토 자 소 재

경기도 포천시



원 황 표 시

범 례	영 칭
	원 황의 지 역 선 (표 황 노 선 호 난 선)
~	보 감 도 계
~	점



면 적 표 시

지 반 부 호	면 적 (㎡)
1	161
2	1471
3	1632

감 정 일 자 : 2020 년 10 월 20 일

감 정 인 : 지적기사

비 고

본 감 정 도는 측량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.